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3.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제안이유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 1,0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2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u></p>